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형사재판절차 등〉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57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5
2.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정의	9
나. 대상사건, 법관의 제척 등	11
다.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 설치 등	14
라. 재판의 이관	20
마. 재판의 녹음·녹화·촬영 허가, 재판기간 등	21
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25
사. 사면 및 감형의 제한	29
아. 작량감경의 배제	37
자. 제보자등의 보호 등	39
차. 부당 인사행위 시정 등	42
카.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	45
 참고의견 1. 특별재판부 또는 특별재판소 설치 사례	50
참고의견 2. 2000년대 사면 관련 통계	5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찬대의원 등 115인
2. 제 안 일 : 2025. 7. 8.
3. 회 부 일 : 2025. 7. 9.

II.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제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 차. 제보자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도록 하며, 내란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제한하고 내란 관련자가 소속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특별형사절차, 제3장 국가의 후속조치 및 역사적 책무로 총 3개의 장(章), 3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②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후보자와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안 제19조부터 제24조), ③ 제정법 대상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특별재판부에서, 제2심 재판은 고등법원 특별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안 제9조, 제16조), ④ 각 심급별 재판기간은 3개월로 한정함(안 제13조, 제17조).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

책임을 위하여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고 작량감경을 배제함(안 제25조).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등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범이 자진 신고 또는 수사에 기여한 경우 형사상 면책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하여 ① 2024년 12월 15일 이후 임명된 자의 임기를 이 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안 제29조), ② 내란·외환 범죄자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며(안 제32조) ③ 민주 정신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민주 항쟁의 역사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 제31조).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장 구분	조 문
제1장 총칙	▪ 목적(§1) ▪ 정의(§2)
제2장 특별형사 절차	제1절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 대상사건(§3) ▪ 법관의 제척(§4) ▪ 다른 법령과의 관계(§5)
	제2절 영장청구와 전속관할 ▪ 전속관할(§6) ▪ 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7)
	제3절 제1심 공판절차 ▪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8) ▪ 재판관할(§9) ▪ 재판의 이관(§10) ▪ 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11) ▪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12) ▪ 재판기간(§13) ▪ 사건의 대국민보고(§14)
	제4절 제2심 공판절차 ▪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15) ▪ 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16) ▪ 재판기간(§17) ▪ 준용규정(§18)
	제5절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19) ▪ 판사회의(§20) ▪ 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21) ▪ 추천위원회의 회의(§22) ▪ 비밀누설의 금지(§23) ▪ 특별재판후보자의 추천 등(§24)
	제6절 판결 이후의 형사상 특례 ▪ 사면 및 감형의 제한(§25) ▪ 작량감경의 배제(§26) ▪ 제보자등의 보호 등(§27)

장 구분	조 문
제3장 국가의 후속조치 및 역사적 책무	▪ 국가의 책무 (§28) ▪ 부당 인사행위의 시정 (§29) ▪ 기념사업의 실시 (§30) ▪ 민주주의 교육 활용 (§31) ▪ 내란 및 외환의 죄 범죄인 소속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 (§32)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3 비상계엄”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에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 조치를 말한다.
2. “제보자등”이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신고·진정·제보 등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3. “부당 인사”란 2024년 12월 3일 이후 2025년 5월 10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명, 전보, 승진, 연임, 재신임 등의 인사행위를 말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란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사법행정 자문기관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판사회의를 말한다.

- 안 제1조에서는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함.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12·3 비상계엄”, “제보자등”, “부당 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 4가지 용어에 대한 뜻을 정하고 있음.

정의 규정은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해당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함.¹⁾

그런데 “제보자등”(제2호)은 제27조, 제28조에서, “부당 인사”(제3호)는 제29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제4호)는 제20조에서만 각각 사용되고 있어 용어 사용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제3호의 “부당 인사”는 제29조 각 호를 통하여 부당 인사의 대상을 다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의 규정을 두는 방식보다는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개별 조문에서 명확히 하는 방식이 법제상 타당해 보임.

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44

나. 대상사건, 법관의 제척 등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2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제3조(대상사건)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의혹사건(비상계엄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촉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2.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3.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건
4. 법원의 체포·구속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건
5. 군,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과 구성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
6.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또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 등에 대한 체포, 납치, 감금 또는 고문 등을 모의하고 실행을 준비한 행위
7. 국가 간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사건
8.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옹호 및 비호하기 위하여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9.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후원을 유도하여 금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품을 사용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형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행위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사실 및

증거를 축소·은폐·증거인멸 또는 사건 관련자의 도주·은닉에 관련된 행위

11.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 사건

제4조(법관의 제척)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 제3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의혹사건(비상계엄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촉발된 사건을 포함)에 관련된 것으로서 각 호의 사건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함.

제11호까지 열거된 각 호의 사건을 분류하면,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②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 및 이를 위한 일련의 계획으로 의심되는 사건(군, 경찰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국가 간 무력 충돌 야기, 헌법기관에 대한 권능행사 방해 사건, 정치인 등 체포 납치 모의 사건), ③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옹호하도록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를 위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사건과 법원의 체포·구속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사건 ④ 이러한 사건에 가담하거나, 증거를 축소·은폐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구속 등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심사하고, 제1심의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 제2심의 공판은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가 담당하는 등 제정안에 따른 특별형사절차가 적용됨.

○ 안 제4조에서는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①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②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인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

이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제척사유²⁾ 이외에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안 제4조제2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 8월 말 기준 8명의 대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대상사건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³⁾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3)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제척사유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입법으로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다른 형사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척사유를 대상사건에서만 확대하는 것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 설치 등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절 영장청구와 전속관할

제6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특별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1명 이상을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3절 제1심 공판절차

제8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제1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②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9조(재판관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절 제2심 공판절차

제15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②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 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의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하며,

안 제8조,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제2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영장 청구 심사를 위한 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제1심·제2심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4890호)(이하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이라 함)이 제출된 바 있음.⁴⁾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 등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를 설치하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시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었음.⁵⁾

찬성하는 의견에 따르면, ①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재판절차를 보통 절차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른바 ‘개별사건 법률’ 또는 ‘처분적 법률’도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4) 2018. 11. 12.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음.

5) 2018. 10. 30 개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민주연구원, 박주민의원, 박법계의원 공동주최) 자료집 참고

경우에는 허용⁶⁾된다고 할 것이고,

②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제1·2심 특별재판부는 기존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으로 구성되므로, 헌법 제27조⁷⁾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③ 헌법 제103조⁸⁾의 재판의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고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헌법은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3항, 제108조⁹⁾ 등에서 사법제도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① 현재 사건배당에 있어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 원칙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대상사건도 일반적인 절차 범위에서 사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당한다면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6) 헌법재판소 2005.6.30. 선고 2003헌마841 등

7)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으로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입법을 통해 재판배당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③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법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정안과 같이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 등 이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따라서, 대상사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더불어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에 대한 기존의 찬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①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으로 제정안과 같이 국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②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기존에 계속된 대상사건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③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의 구조로 인하여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되어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되며,

④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번 제정안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재판의 이관 (안 제10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10조(재판의 이관) ①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재판은 제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 이관의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 ① (생략)

②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2심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재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판부로 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판 이관의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10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은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판갱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301조에서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이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로 이송되는 경우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이 실무상의 태도이므로¹⁰⁾,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특별재판부로 이관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는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판갱신절차 중 어떠한 부분을 간이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임.

10) 법원실무제요 [형사 II], 사법연수원, p. 37

- 법원행정처는 공판갱신제도는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직접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계속 중인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장이 공판갱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직접주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마. 재판의 녹음·녹화·촬영 허가, 재판기간 등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

제3절 제1심 공판절차

제11조(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참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제2심 공판절차

제17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는 항소심에 준용한다.

- 안 제11조는 특별재판부 판결문에 판사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법원이 재판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고, 판결의 정당성 및 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대상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59조¹¹⁾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¹²⁾에 따라 신청을

11)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2)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되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 특검법」”이라 함) 제11조제4항에서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제11조제5항에서는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¹³⁾

- 법원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 사건의 재판 중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판장의 고유권한인 법정 경찰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특별재판부의 재판장에게

13) 「내란 특검법」 제11조(재판기간 등)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법권의 한 내용인 재판장의 고유한 법정 경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유죄로 추정하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 중에 여론의 압력을 강화시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피고인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특히 증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안 제13조 및 제17조는 대상사건에 대한 제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2심은 제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12·3 비상계엄과 그와 관련된 대상사건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내란 특검법」 제11조¹⁴⁾에서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이 제정안의 대상사건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경우

14) 「내란 특검법」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어느 기간이 우선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제1심 재판기간은 6개월로 규정¹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제1심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재판부의 내설 있는 심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기간의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3개월의 재판기간은 짧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임.

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5절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특별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죄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죄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가 추천한 3명(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각 교섭단체, 그리고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2.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3.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1심은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부터, 제2심은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하여 항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⑧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판사회의) 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특별재판부후보자의 추천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 밖에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추천된 사람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추천한다.

- 안 제19조에서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

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상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통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19조제6항에서 제1·2심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기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추천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나 이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임.

- 안 제21조에서는 추천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를, 제22조에서는 추천위원회 회의 방식을, 안 제23조는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안 제24조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 후보자에 대한 외부 천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793호)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의 방식, 외부 천거에 관한 규정,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¹⁶⁾

1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사면 및 감형의 제한 (안 제25조)

제6절 판결 이후의 형사상 특례

제25조(사면 및 감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면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있는 사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
2.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

○ 안 제25조는 내란의 죄¹⁷⁾, 외환의 죄¹⁸⁾ 또는 반란의 죄¹⁹⁾로 유죄

④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① 삭제 [2018.5.29]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후보자의 심사·추천) ① 삭제 [2018.5.29]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

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8)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1988. 12. 31.>

19)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넓은 의미에서 사면(赦免)이란, 국가원수의 행위로서 형(刑)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사면(이하 “사면”이라 함), 감형, 복권으로 구분함.

사면, 감형 및 복권은 헌법 제79조²⁰⁾와 「사면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게 되므로 권력분립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임.

헌법 제79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헌 당시 논의 과정에서 사면권의 통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헌법 조문은 사면권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²¹⁾

사면, 감형 및 복권(이하 “사면 등”이라 함)은 일반사면 등과 특별사면 등²²⁾으로 구분되는데, 그 대상자, 절차, 형식 및 효과 등에 있어 상이함. 일반사면 등은 죄나 형의 종류를 정하여 실시되는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0)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1) 이석민, “사면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2019), 17-20.

22) 현행법은 특별감형을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으로 나타낼 뿐(제5조제4호 등), 특별감형, 특별복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특별감형, 특별복권으로 표현함.

것으로, 일정한 죄 또는 형에만 해당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국회 동의 등 특별사면 등보다 강화된 절차를 통해 실시됨.

<일반사면 등과 특별사면 등 간의 비교>

구 분		대상자	절차·형식 ²³⁾	효 과 ²⁴⁾
사면	일반사면	죄를 범한 사람	국무회의 심의 - 국회 동의 - 대통령령	· 공소권 상실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명	· 형 집행 면제 · 형 선고 효력 상실
감형	일반감형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무회의 심의 - 국회 동의 - 대통령령	· 형의 변경
	특별감형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명	· 형 집행 경감 · 형의 변경
복권	일반복권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국무회의 심의 - 국회 동의 - 대통령령	· 자격 회복
	특별복권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명	· 자격 회복

23)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4)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既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사면 등 실시 현황을 보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은 1995년까지 7회, 일반감형은 1952년까지 3회, 일반복권은 1980년까지 5회 실시된 바 있고²⁵⁾ 1995년을 끝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특별사면은 2000년대 이후로도 2001년, 2011년, 2018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실시되었고 특별감형·복권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

<연도별 특별사면·감형·복권 실시 여부>

구 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구 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2000	○	○	○	2013	○	○	○
2001	×	×	×	2014	○	○	○
2002	○	○	○	2015	○	○	○
2003	○	○	○	2016	○	○	○
2004	○	×	○	2017	○	○	○
2005	○	○	○	2018	×	×	×
2006	○	○	○	2019	○	○	○
2007	○	○	○	2020	○	○	○
2008	○	○	○	2021	○	○	○
2009	○	×	×	2022	○	○	○
2010	○	○	○	2023	○	○	○
2011	×	×	×	2024	○	○	○
2012	○	○	○	-			

주: 노란 음영은 특별사면·감형·복권 중 어느 것도 실시되지 않은 해

○ 안 제25조는 내란죄, 외환의 죄 및 반란의 죄로 유죄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고 특별사면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으로,

25) 일반사면은 1948년, 1961년, 1962년, 1963년(2회), 1981년 및 1995년에, 일반감형은 1948년, 1950년 및 1952년에, 일반복권은 1948년, 1962년, 1963년, 1978년 및 1980년에 각각 실시되었음.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사면권 행사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위협을 초래하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무관용 원칙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달리 특별사면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면권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②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특별사면 대상자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찬성하는 견해²⁶⁾와,

①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할 경우 여야 정치구도에 따라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② 특별사면은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가 이에 개입할 경우 고유 권한의 침해 또는 권력균형의 왜곡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²⁷⁾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은 사면이 제한되는 범죄를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로 유죄확정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의 대상 사건을 전제로 유죄확정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26) 김종덕, 「사면권 행사의 통제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법학연구, 제59집, 2015.9.

27) 고문현 「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3. 5.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외국의 경우 국가수반의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입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함.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 제2조제2항에서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면권을 가진다고 정하여 사면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²⁸⁾ 연방 규칙 상 수형자 신청에 의한 사면 절차²⁹⁾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³⁰⁾ 등을 규정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주(州)에서는 대상의 한계나 다른 절차적 한계를 명문으로 두는 경우도 존재함.³¹⁾

일본의 경우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별은사(恩赦)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은사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³²⁾ 수감자 본인의 신청으로만 개별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³³⁾

독일의 경우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사면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28)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II, Section 2, Clause1

-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29) 28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1.1

30) 28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1.6(b)

31) 아이오와 주 등에서는 반역,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탄핵이 된 자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고 있으며, 절차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음. 이석민, 앞의 보고서, 39-40.

32) 일본 「은사법 시행규칙」 제6조

33) 일본 「은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및 제1조의2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음.³⁴⁾

- 법원행정처는 특별법에서 「사면법」 제8조, 제9조에 대한 특칙을 두어 대상사건으로서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특별 사면 등을 금지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 등의 권한을 부여한 목적과 취지,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 한 권력분립의 원칙, 해당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균형법상 반란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 유형, 지위, 행위 태양이나 가담 정도 및 선고형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 사면 등을 금지하고,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만 특별사면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4) 이혜미,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 8.

아. 작량감경의 배제 (안 제26조)

제26조(작량감경의 배제) 제25조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 제26조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또는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53조³⁵⁾ 정상참작감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형법」 제56조³⁶⁾에서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① 각칙 본조에 따른 가중, ② 제34조제2항³⁷⁾(특수 교사·방조)의 가중, ③ 누범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따르도록 규정함.

제일 마지막 가중·감경 사유인 정상참작감경은 「형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51조³⁸⁾에 따른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35)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6) 「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37)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진행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38)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 사건별로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음.

- 안 제26조는 내란의 죄, 외화의 죄 및 반란의 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뤄 질 필요가 있으므로 법관의 자의적인 형의 감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을 ‘제6절 판결 이후의 형사상 특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작량감경은 유죄 확정 판결 당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절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작량감경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는 그 범죄의 법정형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나,

제정안 제25조 각 호에서 정한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죄(반란의 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 등 최소 유기징역·금고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형벌 본래의 목적과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기능을 넘어서 과잉처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균형법상 반란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 유형, 지위, 행위 태양이나 가담 정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작량감경을 금지하고 있어 이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관독립의 원칙 위반 또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거나,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자. 제보자등의 보호 등 (안 제27조)

제27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제보자등은 정보 제공 또는 제공 의사로 인하여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제보자 보호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보자등이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또는 진술로 수사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관계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판부는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안 제27조제1항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신고·진정·제보 등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제2항은 제보자들의 보호 및 관련 자료 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제3항은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분보호,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신고자 보호 내용〉

보호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해고, 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 금지	제15조	제62조
▪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 비공개	제12조	제64조
▪ 신변 보호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시 신변 보호 조치	제13조	제64조의2
▪ 형 감면 -신고자 형 감면, 징계 감면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제14조	제66조
▪ 포상금 및 보상 -공익증진·재산상 이익 발생 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제26조 제26조의3	제68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거나 예산 집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한 행위 등의 부패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 12·3 비상계엄에 관한 신고·진정·제보 등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에 포함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³⁹⁾,

안 제27조에서는 신분상 불이익 금지, 보상 또는 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비밀보장, 신분보호, 형감면 조치 등 더욱 세밀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7조제4항은 제보자등이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또는 진술로 수사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보자의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신고 및 협조를 유도하고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로 보임.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군형법은 포함되어 있으나 형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권익위원장 “윤석열 발언 증언 광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한겨레, 2025. 2. 20. 기사 참조

차. 부당 인사행위 시정 등(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장 국가의 후속조치 및 역사적 책무

제28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제보자등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부당 인사행위의 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인사 조치가 계엄 또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의 방해, 증거의 인멸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명된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명행위

2. 2024년 12월 15일 이후의 모든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

② 같은 기간에 임명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의 재직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30조(기념사업의 실시) ① 국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항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의 민주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하여 목석 설치 등의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민주주의 교육 활용) ① 국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헌정수호의 과정을 자유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 중요한 민주적 항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등 공공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한 교육자료의 개발, 교과서 수록, 전시 및 체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28조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하여 제보자등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30조는 12·3 비상계엄에 저항한 국민의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 제31조에서는 국민의 저항 정신과 민주주의적 역사적 의미를 공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한 신고·진정·제보 등을 제공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을 보호하고, 기념사업 실시와 공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신을 확산시키고 역사 인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안 제29조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이루어진 임기제공무원 또는 2024년 12월 15일 이후의 모든 정무직 및 고위 공무원단 인사 조치가 계엄 또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의 방해, 증거의 인멸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명된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료된 것으로 보고,

같은 기간에 임명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이사 및 감사⁴⁰⁾의 임기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의 재직기간 만료일로 간주함.

- 이는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향후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8조⁴¹⁾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공공기관의 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도 개별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의 신분보장 또는 임면에 관한 규정⁴²⁾을 두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와 이들 규정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40) 경향신문, ‘12·3 불법 계엄 후 공공기관장 48명 임명...’알박기‘논란, 2025. 5. 4.

41)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또한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기간에 임명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2024년 12월 15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기간이 어떠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제29조제1항제1호 대상자의 임기 만료 간주일과 제2호 대상자의 임기 만료 간주일이 달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 등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카.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 (안 제32조)

제32조(내란 및 외환의 죄 범죄인 소속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 ①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의 기준, 절차, 반환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32조는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 시 소속했던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일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정당이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후보자를 공천·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보조금으로 구분됨.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

「정치자금법」	배분 대상 정당		배분 비율
제27조 제1항	교섭단체 구성 정당		100분의 50 균등
제27조 제2항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아닌 5석 이상 정당		100분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2% 이상	100분의 2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2% 미만이나 의석 정당 중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득표수 비율 0.5% 이상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득표수 비율 2% 이상	
제27조 제3항	의석을 가진 정당		잔여분의 100분의 50× 국회 의석수 비율 잔여분의 100분의 50×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하거나,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회수가 어려울 때에는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고,⁴³⁾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도록 함.⁴⁴⁾

○ 안 제32조는 내란의 죄(내란의 죄 중 부화수행 또는 단순 관여자는 제외)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이 소속한 정당 또는 해당 범죄 행시 소속하였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43) 「정치자금법」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 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4)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④ 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시키려는 것임.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직접적인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소멸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32조는 정당에 소속하거나 소속하였던 자의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 지지·추천 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 및 당원 모집⁴⁵⁾,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⁴⁶⁾, 정책토론회 개최⁴⁷⁾,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45) 「정당법」 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46)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7)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①「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⁴⁸⁾ 등 「정당법」에 따라 보장받는 정당 활동과의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의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반환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 법원행정처는 특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전면적으로 제한될 경우, 당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나아가 당해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정당 해산에 준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으므로 정당제도 내지 정당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기간의 제한 없이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우에 따라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

48) 「정당법」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특별재판부 또는 특별재판소 설치 사례

설치년도	특별재판부 (특별재판소)	법령상 근거	헌법상 근거
1948년	반민족 행위 특별재판부	반민족 행위 처벌법	대한민국 헌법(제1호, 1948. 7. 17. 제정) 제10장 부칙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특별재판소 및특별검찰부 조직법	대한민국 헌법(제5호, 1960. 11. 29. 시행) 부칙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1961년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혁명적 행위자 혁명재판소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국가재건 최고회의령)	대한민국 헌법(제6호, 1963. 12. 17. 시행) 부칙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자료 :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 검토보고서 p.9 재인용

「반민족행위처벌법」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과 절차

제19조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한다.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부장1인, 부장재판관3인, 재판관12인으로써 구성한다.

전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중에서 5인, 고등법원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중에서 6인, 일반사회인사중에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검찰부검찰관장1인, 차장1인, 검찰관7인으로써 구성한다.

제21조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22조 특별재판부부장과 특별재판관은 대법원장 및 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특별검찰관장과 특별검찰관은 검찰총장 및 검찰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제23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일반재판관 및 일반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제24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국회의원, 법관과 검찰관 이외의 공직을 겸하거나 영리기관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5조 특별재판부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1인과 재판관4인의 합의로써 재판한다.

제26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일반검찰사실을 기초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공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참고자료 2

2000년대 사면 관련 통계

(단위: 명)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00.08.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02.07.10.	-	-	-	-	-	-	-	월드컵경축 운전면허발점 등 감면 4,810,000명
'02.12.31.	-	54	-	4	-	25	39	북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면제 포함
'03.04.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 (공안사범 사면)
'03.08.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04.05.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05.08.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 경축 (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06.08.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 경축 (건설업체 벌점 삭제 등 4,390명)
'07.02.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08.01.01.	-	8	-	14	-	18	35	
'08.06.0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08.08.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결 격기간 해제 500명)
'09.12.31.	-	1	-	-	-	-	-	
'10.08.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12.01.12.	-	595	-	185	-	-	165	
'13.01.31.	-	16	-	3	-	18	18	
'14.01.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5.08.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16.08.15.	-	858 (6)	-	261	-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17.12.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19.02.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19.12.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20.12.31.	-	556	-	153	-	8	2,307 (1)	2021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118,923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119,608명)
'21.12.31.	-	642	-	131	-	369	1952	2022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980,780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983,051명, 전직 대통령 포함)
'22.01.26.	-	-	-	-	-	2	-	2022년 신년 후속조치
'22.08.15.	-	495	-	87	-	7	1,104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592,037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593,509명)
'22.12.28.	-	9	-	2	-	1,342 (4)	20 (1)	2023년 신년
'23.08.15.	-	2,062	-	82	-	26 (4)	- (2)	2023년 광복절

※ ()는 국방부 소관

자료: 법무부, 「2024 법무연감」

참고로, 2024년에도 설 명절 기념 특별사면·감형·복권(2024. 2. 7. 980명 대상) 및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감형·복권(2024. 8. 15. 1,219명 대상) 등이 실시되었음.